

제 호

교육기관 지정서

1. 교육기관 명칭:
2. 소재지:
3. 대표자 성명: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